



# Solvency II가 생명보험의 재보험에 미치는 영향

이선주 연구원

2016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Solvency II에는 요구자본에서의 재보험 인정비율 변경,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Counterparty default risk) 반영, 제3국 동등성(Third-country equivalence)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럽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분산, 자본관리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재보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EU 각국의 감독당국은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역외 재보험(Risk transfers overseas)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Solvency II에는 요구자본에서의 재보험 인정비율 변경,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Counterparty default risk) 반영, 제3국 동등성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됨

〈표 1〉 Solvency I 과 Solvency II의 재보험 처리 비교

구분	Solvency I	Solvency II
요구자본 (Required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보험 출재 전액 인정을 제한하고, 요구자본의 감소는 15%를 한도로 함</li> <li>거래상대방 및 재무건전성 고려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보험 출재 한도 없음</li> <li>재보험 출재 시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에 대한 자본 고려</li> </ul>
자산가치 (Asset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유보험료(net reinsurance)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보험 회수가능액만큼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보험료(gross of reinsurance)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보험 회수가능액으로 인한 감소 없음</li> </ul>
책임준비금 (Technical Pro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금은 보유보험료로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선추정치는 수입보험료로 산출</li> <li>리스크 마진은 보유보험료로 산출</li> </ul>

자료: E&Y(2017, 4), "Life reinsurance landscape: How does SolvencyII change the landscape for life reinsurance"

- 유럽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분산, 자본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재보험 활용도가 Solvency II의 규제 변화로 인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sup>1)</sup>

- 재보험은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었으나, Solvency II 시행으로 재보험 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1) Ernst & Young(2017), "Life reinsurance landscape: How does Solvency II change the landscape for life reinsurance"

- Solvency II에서 재보험 인정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지급능력요구자본(SCR)<sup>2)</sup> 산출 시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그룹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그룹 내의 재보험회사(reinsurance mixer)에게 리스크를 전가함으로써 재보험 출재 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제3국 동등성 평가<sup>3)</sup>로 비유럽국가 재보험회사들의 경쟁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럽 보험회사들의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짐

■ 유럽 생명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EU 각국의 감독당국은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역외 재보험(Risk transfers overseas)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 Solvency I 과 달리 Solvency II는 재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산출 시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를 반영하는데, 이는 담보계약(collateral arrangement)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 파산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독당국은 거래상대방의 관할 국가, 담보물의 위치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전가하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sup>4)</sup>가 우려됨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일부 재보험회사에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때 집중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역외 재보험계약 체결 시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출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감독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kiRi**

2)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은 향후 1년 동안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0.5% 이내로 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SCR에 미달하는 경우 SCR 충족을 위한 시한 및 방법 등을 보험회사에 요구함

3) EU 비회원국 보험회사(역외 보험회사)가 EEA에서 영업할 경우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과 Solvency II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국제보험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함임. 자세한 내용은 김해식·임준환(2017. 4. 3),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KiRi 리포트』 참고

4) 재보험자산이 특정 거래상대방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함